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96
----------	------

제출년월일: 2011년 2월 일
제출자: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제천시평생학습센터 이전 및 독립건축물 사용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의 규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구성 개정(안 제6조)
- 시설의 위탁관리 시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취소 사유 등 신설(안 제15조~제18조)
-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 시설 훼손 시 손해 배상 등 신설(안 제19조~제23조)

3. 의안전문: 불임

4. 기타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나. 입법예고기간: 2011. 1. 1~1. 20(20일간)
- 다. 2011년도 제2회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결과: 수정가결
 - 부칙에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해촉)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제천시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

5. 관계법령: 불임

첨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및 제천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강당, 배움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제천시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체육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자치단체 소속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천시평생학습센터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제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센터는 제천시 동명로 4에 둔다.

제12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연수
6. 기타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조직원 구성) 시장은 평생학습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운영 및 사용)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이하 "수탁자"라 한다)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시장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승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평생교육 기관이나 대학 등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사용신청)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자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단체
3. 「장애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및 수급권자 5명 이상 또는 그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센터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2.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3. 사용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제23조(손해배상) 평생학습센터 시설 등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해촉)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제천시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 기준액

수강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수강료	1인 1월(4~5주)	5,000~15,000	1주 4시간 이내

대관료(사용료)

(단위: 원)

구 分	시 설 별	대여기준	사용료	비 고
대관료	평생학습강당, 배움1실, 배움2실	1시간	15,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20% 추가
	배움3실, 배움4실	1시간	10,000원	"
대여비	빔프로젝터	1식	10,000원	2시간 기준
	노트북	1식	10,000원	"

※ 사용시간: 평일(월 ~ 금 09:00 ~ 22:00), 토요일 09:00 ~ 18:00

※ 휴관일: 공휴일(토요일 제외)

※ 평생학습강당 : 마이크(4개(유선2개, 무선2개)),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강의실: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사용인원	계(명)	남	여	사용자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성인() / 노인() / 기타()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 . . . ()				
첨 부					
대 관 료					
사 용 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폐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p>위와 같이 제천시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천 시 장 귀 하</p>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사용인원	계(명)	남	여	사용자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성인() / 노인() / 기타()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 . . . ()				
변경내용					
사용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 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쾌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 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p>위와 같이 제천시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시장 귀하</p>				

신·구 조문 대비 표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및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및 제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그 _____.</p> <p><u>제2조(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강당, 배움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p><u>제2조(기본원칙)</u>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p>	<p><u>제3조(기본원칙)</u>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에 _____.</p> <p><u>② <삭제></u></p>
<p><u>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u>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육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p>	<p><u>제4조(평생교육경비의 지원)</u>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p>

<p>②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학습시설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p>	<p>② <삭제></p>
<p>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교육 -----.</p>
<p>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 2. (생략)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 	<p>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
<p>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 -----.</p> <p>③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과 시의원,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둈다.</p>	<p>제7조(구성) ① -----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p> <p>② 의장은 시장 ----- 부의장 -----.</p> <p>③ 위원은 제천시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 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p> <p>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체육과장이 된다.</p>
<p>제7조(임기) (생략)</p>	<p>제8조(임기)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p>	<p>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 -----.</p> <p>② 부의장은 의장을 ----- 의장이 -----.</p>
<p>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p>제10조(회의 등) ① ----- 어느 하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2. (생략) ② (생략) ③ (생략)</p> <p><u>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제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② (생략) ③ <신설></p> <p><u>제11조(위치) 평생학습센터는 제천시립도서관 내에 둔다.</u></p> <p><u>제12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학습도시 ----- 2. 평생학습 관련 기관----- 3. 평생학습 프로그램 ----- 4.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신설> 6. <신설> <p><u>제13조(조직원 구성)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 교육사를 들 수 있다.</u></p> <p><u>제14조(운영) 시장은 평생학습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생학습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u></p>	<p>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u>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 교육 ---</u></p> <p>② (현행과 같음) ③ 평생학습센터는 제천시 동명로 4에 둔다.</p> <p><u>제11조(위치) <삭제></u></p> <p><u>제12조(기능) (현행과 같음)</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연수 6. 기타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u>제13조(조직원 구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들 수 있다.</u></p> <p><u>제14조(시설의 운영 및 사용) ①</u></p> <p style="text-align: right;">『제천시 사무의 민자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제천시</p>
--	---

현 행	개 정 안
<u>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u>	<u>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이하 “수탁자”라 한다) 평생 학습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② <신설>	<u>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u>
③ <신설>	<u>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④ <신설>	<u>④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전 시장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승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2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비의 지원) <신설>	제1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의 수행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신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 기간 중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도·감독) <신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p><u>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제18조(위탁운영의 취소) <신설>	<p><u>제18조(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사용신청) <신설>	<p><u>제19조(사용신청)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u></p>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신설>	<p><u>제20조(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자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u></p>
제21조(사용료 면제) <신설>	<p><u>제21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단체

	<p><u>3. 「장애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및 수급권자 5명 이상 또는 그 단체</u></p> <p><u>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u>제22조(사용료 반환) <신설></u>	<p><u>제22조(사용료 반환) 남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u></p> <p><u>1. 평생학습센터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u></p> <p><u>2.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u></p> <p><u>3. 사용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u></p>
<u>제23조(손해배상) <신설></u>	<p><u>제23조(손해배상) 평생학습센터 시설 등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u></p>
<u>현행</u> <u><제15조>를 <제24조>로 조문 위치 이동</u>	<p><u>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9.5.8 법률 9641호]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천시 공고 제2010 -1419호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1.

제 천 시 장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이전 및 독립건축물 사용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 평생학습의 활성화 및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시설 운영함에 있어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용어의 정의 등 신설 (안 제2조)
- 시설의 위탁관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신설(안 제15조)
- 시설 위·수탁의 의무 명확성을 위해 수탁자의 의무 등 신설 (안 제16조)
- 시설의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위탁취소사항 등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 시설의 사용료 징수, 면제, 반환 등 신설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법 준용 등 신설 (안 제22조, 제23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월 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평생학습체육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731 , FAX 641 - 5749 담당자 : 김병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제천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명: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1. 01. 01. ~ 01. 20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공고
4. 홈페이지 조회건수: 75건
5. 의견제출: 없음

붙임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실무관 김병호 평생학습팀장 박기훈 평생학습체육과장 01/21
김홍래

협조자

시행 평생학습체육과-762 (2011.01.21.) 접수 ()

우 390-843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천남동 12-2)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733 / 전송 043)641-5749 / nicesph88@korea.kr / 공개